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공운위 위원에 노동단체 추천 1인 포함 의무화〉
■ 이수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534호)

2025. 4.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공운위 위원에 노동단체 추천 1인 포함 의무화(안 제9조제1항제5호 신설 등)	3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수진의원 등 18인

나. 발 의 일 : 2025. 1. 15.

다. 회 부 일 : 2025. 1. 1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양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정부, 노동조합, 기업, 시민단체와 같은 비정부기구(NGO)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협력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의사결정을 내림으로써 사회적 갈등요소를 협력요소로 변환하는 정책 관리체제 방식이 활용되고 있음.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부는 각종 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정책심의와 결정을 하는 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특히 노동계의 참여는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각종 위원회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지칭하는 용어로 ‘노동계’, ‘근로자 대표’,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등 다양한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어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계의 일관된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각 위원회가 특정 노동 단체의 대표성을 인정하거나 배제할 경우,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의 선정 과정에서 법률 해석의 모호성으로 인한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큼.

이에,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

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노동계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며,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의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등).

Ⅲ. 검토의견

1. 공운위 위원에 노동단체 추천 1인 포함 의무화(안 제9조제1항제5호 신설 등)

현 행	개 정 안
○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기재부장관) 1인 및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 - 국무조정실 차관급 공무원 1인 -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차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 주무기관의 차관·차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 공공기관의 운영과 경영관리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독립적인 사람으로서 법조계·경제계·언론계·<u>학계</u> 및 <u>노동계</u>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는 <u>11인</u> 이내의 사람 <신 설>	○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기재부장관) 1인 및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공공기관의 운영과 경영관리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독립적인 사람으로서 법조계·경제계·언론계·<u>학계</u>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는 <u>10인</u> 이내의 사람 - <u>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u> 추천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는 <u>사람 1인</u>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는 현행법 제8조1)에 따라 공공기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하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지정, 지정해제와 변경지정
2.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기관의 신설 심사
3. 제11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4.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사의무 등의 위반에 대한 인사상 조치 등
5.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기능조정 등
6.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혁신지원 등
7.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의 선임비상임이사 임명
8.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 임명 등
9. 제33조에 따른 보수지침
10. 제3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및 제52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관의 지정, 경영공시, 기능조정, 기관장을 포함한 임원의 임명·해임, 경영실적 평가 등 공공기관의 주요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로, 기획재정부장관 소속 하에 설치되어 있음.

현행법 제9조²⁾는 이러한 공운위 구성에 있어서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민간위원의 경우 ‘공공기관에 전문성이 있고 중립적인 사람으로서 법조계·경제계·언론계·학계 및 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는 11인 이내의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이러한 공운위 민간위원에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 추천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1인’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려는 내용임.

현행 시행령에서는 “공공기관의 운영과 경영관리에 관하여 학식이

임원에 대한 해임이나 해임 건의 등

11.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비상임이사·감사에 대한 직무수행실적 평가 등
 12.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등
 13.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지침
 14. 제51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감독의 적정성의 점검과 개선
 15. 제52조의4제1항에 따른 명단의 공개
 16. 제52조의5제1항에 따른 합격취소등
 17.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경영실적 평가) ⑤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 기준과 방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되,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1. 경영목표의 합리성 및 달성 정도
 2. 주요사업의 공익성 및 효율성
 3. 직원의 고용 형태 등 조직·인력 운영의 적정성
 4.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이행 등 재무운용의 건전성 및 예산 절감노력
 5. 제13조제2항에 따른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6. 합리적인 성과급 지급제도 운영
 7. 그 밖에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련된 사항

풍부”한 사람을 다음과 같이 구체화하고 있음.

[“공공기관의 운영과 경영관리에 관하여 학식이 풍부한 사람”]

시행령 제11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제2항
1.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법 및 이 영에 공공기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임원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4.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지고 제3호에 열거된 기관의 감사·회계 부문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또는 정무직 공무원의 직에 근무한 자 6.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경력 등이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2024년 12월 기준 공운위 민간위원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야별 구성은 다음과 같음.

[공운위 민간위원 분야별 구성(‘24.12. 기준)]

총계	학계	법조계	경제계	관(官)계	노동계	언론계
10	4	2	1	1	1	1

자료: 기획재정부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공운위의 특성을 고려할 때, 그 민간위원에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1인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노동계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공운위의 민주성과 대표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음.

기획재정부는 개정안에 대하여 공운위는 현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되어 있으므로 기획재정부장관이 민간위원에 대한 추천권을 행사하는 것이 당연하고 바람직하며, 현재 공운위는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되어 민주성과 대표성을 갖추고 있다는 입장임.

그러나 현재 공운위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맡고 있는데, 민간위원을 모두 위원장이 추천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공운위의 의사결정에 위원장의 의중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추천권한을 노동조합에게 부여함으로써 다양한 사회계층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음.

또한, 공운위는 전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므로 그 영향력 및 공공기관의 갖는 공익적 특성을 고려할 때 노동계 민간위원을 노동단체의 대표성을 갖는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로 명시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첫째, 공운위 민간위원 추천권한과 관련하여, 노동계에만 별도로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타 분야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은 민간위원의 추천권한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부여하고 있는 반면, 개정안은 노동계에 한하여 이러한 민간위원 추천권한을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로 이관하려는 것임.

그러나 학계나 법조계, 경제계, 관계, 언론계와 달리 노동계에만 별도의 추천권을 부여할 경우 타 분야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³⁾.

둘째, 개정안은 노동계 위원을 1명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더 많은 노동계 위원을 구성하는데 제약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음.

현행법은 법조계·경제계·언론계·학계 및 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11인 이내의 민간위원을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개정안은 노동계 민간위원을 1명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처럼 노동계 민간위원의 수를 1명으로 규정할 경우, 분야별 민간위원의 숫자가 정해져 있지 않아 1명 이상의 노동계 민간위원 구성이 가능한 현행에 비해 노동계 위원 구성에 제약이 생기고 탄력적 구성 및 운영이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본래 취지를 약화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

3) 참고로, 기획재정부도 노동단체에만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은 경영단체 등과의 형평성에 어긋날 우려가 있으며, 공익성·중립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셋째,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에 민간위원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노동조합’을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등 근로자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나 그 연합단체로 정의하면서, ‘총연합단체-연합단체-단위노동조합’의 층위를 갖춘 체계로 구조화하여 그 설립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⁴⁾.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총 6개이며, 총연합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미가맹 노동조합이 1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 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 다. 공제·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 마.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10조(설립의 신고) ①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12조제1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각 호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동종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와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총연합단체를 말한다.

[총연합단체별 조합원 수 현황('23.12. 기준)]

단체명	한국노총	민주노총	한장노총	전국노총	통합노총	대한노총	미가맹	전체
조합원 수(명)	1,160,162	1,086,618	7,821	1,441	1,068	511	479,758	2,737,379
비중(%)	42.4	39.7	0.3	0.1	0.0	0.0	17.5	100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개정안은 노동계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에 민간위원 추천권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가맹하지 않은 노동조합의 의견은 배제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원장이 된다.	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공공기관의 운영과 경영관리 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중립적인 사람으로서 법조계·경제계·언론계· <u>학</u> <u>계</u> 및 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추천 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는 <u>11인</u> 이내의 사람	4. ----- ----- ----- ----- <u>학</u> <u>계</u> ----- ----- ----- <u>10인</u> ----- -----
<신 설>	5. <u>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u> <u>노동단체의 추천으로 대통령</u> <u>이 위촉하는 사람 1인</u>
②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 <u>제4호</u> 및 <u>제5호</u> ----- ----- -----.
③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은 공공기관의 자율·책임 경영체제 확립 및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그 양심에 따라	③ ---- <u>제4호</u> 및 <u>제5호</u> ----- ----- ----- -----

현 행	개 정 안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
④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될 수 있다.	④ ----제4호 및 제5호-----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⑤ 위원장은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대통령에게 해촉을 건의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제1호의 경우에는 해촉을 건의하여야 한다.	⑤ -----제4호 및 제5호----- ----- ----- -----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0조(운영위원회의 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은 위원장이 안건별로 지명하고,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회의 구성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	제10조(운영위원회의 회의) ① -- ----- ----- ----- ----- ----- -----제4호 및 제5호----- ----- -----

현행	개정안
다. ② ~ ⑥ (생략)	-----. ② ~ ⑥ (현행과 같음)

문의처
02)6788-5157